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편 관련 '청소년기본법 시행령' 개정 사항 안내

1.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국가전문자격으로 운영하고 있는 **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시험 개편 관련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**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, 각 대학 **청소년관련학과 등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관련학과**에서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검정과목 이수 등을 위한 **학교 교과과정 운영에 반영**할수 있도록 반드시 **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3. 아울러,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관련 안내는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**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공고**를 통해 이루어 짐을 알려 드립니다.  
 ※ 본 공문은 공문발송일자(23.12.29) 기준 전자문서 수신이 가능한 전국대학에 발송되었음

<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주요 변경사항>

구분	개정 전	개정 후 (2027.1.1 시행)
자격등급	1·2·3급	1·2급
1급	(응시자격)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+ 경력3년 이상 (합격기준) 주관식·객관식 필기시험 통과	변경 없음  (합격기준) 객관식 필기시험 통과
2급	(응시자격) ① 검정과목 이수자 : 필기 시험 면제 ② 검정과목 미이수자 : 필기·면접시험 * 학력에 따라 응시자격 경력요건 차등  (합격기준) 2급 시험 응시 합격 후 자격 연수	<b>전문학사 이상 검정과목 이수자 +자격 연수</b>
검정과목	1급(5과목) / 2급(8과목) / 3급(7과목) ※ 과목당 이수학점 기준 없음. 따라서 동일 과목이라도 학교별 2 학점 또는 3학점으로 학점 상이	○ 1급(변동없음) / 2급( <b>9과목</b> ) / 3급(폐지) ☞ 2급 과목에 ' <b>청소년기관 현장실습 (130시간) 추가</b> ○ 이수학점 기준 신설 ※ <b>대학은 3학점, 대학원은 2학점 이상</b>

붙임 1. 대통령령제34050호(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). 끝.

## 여성가족부장관



수신자 전국 대학, 전국대학2, 전국대학3

사무관

**박은희**

청소년활동진흥과 2023. 12. 29.

홍과장

**양철수**

협조자

시행

청소년활동진흥과-4601

(2023. 12. 29.)

접수

우 03171

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, 여성가족부 (세종로)

/ <http://www.mogef.go.kr>

전화번호 02-2100-6252

팩스번호 02-2100-6459

/ [trueeh76@korea.kr](mailto:trueeh76@korea.kr)

/ 대한민국 공개